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委員會  
條例中改正條例(案)

의안  
번호 161

제안년월일 : 1993. 3. 22.  
제 안 자 : 運營委員會委員長

## 1. 提案經緯

1993년 3월 22일 제16회 영등포구의회(임시회) 평회중 개최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윤태봉의원외 1명이 成案하여 書面動議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심사한바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원안 가결

## 2. 提案理由

현행 영등포구 위원회 조례의 정수가 도시건설위원회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영등포구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(안)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위원회간 위원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

## 3. 主要骨子

제2조 제2호의 “11인”을 “11인이내”로, 동조 제3호의 “8인”을 “11인이내”로, 동조 제4호의 “13인”을 “11인이내”로 함.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委員會  
條例中改正條例(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호중 “11인”을 “11인이내”로 하고, 동조 제3호중 “8인”을 “11인이내”로 하며, 동조 제4호중 “13인”을 “11인이내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新·舊條文對比表

現 行	改 正 案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(생략)	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(현행과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같음)
2. 행정재무위원회 11인	2. ----- 11인 이내
3. 시민보사위원회 8인	3. ----- 11인 이내
4. 도시건설위원회 13인	4. ----- 11인 이내